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12 선고 2021가단23165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와 1989.

9. 28. 접수 제61538호, 제61539호, 제61540호, 제61541호, 제61542호, 제61543호, 제61544호, 제61545호, 제61546호, 제6154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4. 6. 11. 접수 제3844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각하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므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3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피고 C에 대하여 주등기인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이상 그 부기등기인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지분이전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이희경

별지